##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



[시행 2023. 7. 22.] [관세청예규 제286호, 2023. 7. 18., 일부개정]

관세청(세원심사과), 042-481-7873

제1조(목적) 이 예규는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 및 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수출시 관세 등의 환급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위탁가공 수출물품의 환급)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.

- ①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다른 경우(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)에는 해당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수출물품으로 취급하여 환급한다.
- ②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같은 경우(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)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. 다만,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「대외무역법」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 인정을 받아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한다.
- 1.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」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환급한다.
- 2.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「관세법」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등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환급하지 아니하고, 수입신고수리를 할 때 처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수입물품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.

본 물품은 해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20 .
. . 수출신고번호 호로 수출한 물 품의 재수입물품임

- 제3조(재수입물품의 수출시 환급)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초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제조·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였을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「관세법」제101조 제1항제2호의 관세 경감을 받지 못한 가공·수리분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세 등도 같이 환급할 수 있다.

**제4조(환급기관의 제한)** 제2조에서 정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세관장이 환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## 부칙 <제286호,2023.7.18.>

**제1조**(시행일) 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예규는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